

# 협약서

한국여성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 1-1. 이 협약은 "의료원"이 "재단"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2-1. "재단"의 검진대상자라 함은 "재단"과 "재단"이 인정하는 여성공익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을 말한다.
- 2-2. "의료원"은 "재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첨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재단"이 의뢰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한다.
- 2-3. "재단"이 의뢰한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결정된 비용을 검진대상자가 검진 당일 직접 "의료원"에게 결제하도록 한다.
- 2-4. <2-2>, <2-3>에 있어 건강검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단"과 "의료원"은 상호 협조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의 설명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할 물품의 전달은 "의료원"이 한다.

## 제 3 조 (책임사항)

- 3-1. "재단" 의뢰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원"에게 있다.
- 3-2. "재단" 의뢰 검진대상자가 검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원"에게 있다.

## 제 4 조 (결과에 대한 통보)

- 4-1. "재단" 의뢰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시행 후 검진 결과는 "의료원"이 결과 확인 진료 시에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재단" 의뢰 검진대상자에게 "의료원"이 직접우편 발송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 제 5 조 (분쟁 및 관할법원)

- 5-1. 본 협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서 상의 문구 해석에 있어 "재단"과 "의료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2. <5-1>항에 있어 상호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 6 조 (손해배상)

- 6-1. "의료원"은 "재단" 또는 "재단" 의뢰 검진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2. 기타 "의료원"은 본 협약 이행에 있어 "재단"의 검진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건강 상태, 검진 내역, 개별 상담내용 포함)가,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문서보안 및 전산 상의 보안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의료원"의 고의/과실 등 귀책으로 상기 사항이 초래될 경우 "의료원"은 그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 (협약의 임의양도 등 금지)

- 7-1. "의료원"은 "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건 협약 또는 본 건 협약에 수반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거나 기타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협약 기간 및 자동 갱신)

- 8-1.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8-2. 본 협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의료원" 또는 "재단"이 상대방에게 협약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인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협약갱신 시 상호 합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과 "의료원"은 상기의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며, 본 협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행하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모든 협약사항을 확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22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원장 안명옥

